

2025년도 (재)한국의학연구소 「공모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재)한국의학연구소는 2025년도 「공모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1일

(재)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재)한국의학연구소 공모연구지원사업

□ 사업목적

- (연구자 유형별) 맞춤형 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자의 역량과 단계에 적합한 성장을 유도하고, 연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 보건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 도출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지원분야/주제 : 보건의료분야/자유주제

□ 공고기간 : 2025.09.01.(월) ~ 2025.09.20.(토), 총 20일간

○ 전산 접수기간 : 2025.09.03.(수) 오전 9시 ~ 2025.09.20.(토) 오후 2시까지

※ (유의사항) 마감 당일, 전산 시스템상 오류 조치는 불가능하므로 사전 접수 필수

□ 접수방법 : (재)한국의학연구소 연구지원시스템(KRIS)을 통한 신청 접수

○ 지원 과제 유형별 세부 내용 확인 후, 신청 접수

※ KRIS 접수 방법은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지원과제(요약)

(단위: 천원)

공고 번호	유형	지원 목적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과제당)	과제 수	지원 기간
제2025-01호	도약형	박사후연구원의 연구 독립 기반 마련 및 신진연구자로의 전환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박사후연구원 (Post-Doc)	20,000	5개	'25.11.01 ~ '26.10.31
제2025-02호	성장형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역량 성장을 지원	대학 조교수급 전임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자	50,000	4개	
제2025-03호	선도형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핵심 연구의 주도 및 확산을 지원	대학 부교수급 이상의 우수 연구성과 보유자	100,000	2개	

※ 최종 선정 과제 수와 지원 규모는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신청 제한사항

- (데이터 신청 제한) KMI 검진 데이터 신청 및 활용 불가
 - 본 사업에서는 KMI 검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음
 - 연구지원시스템(KRIS)에서 데이터 활용 신청 항목은 반드시 ‘아니오’ 로 선택
- (중복 신청 제한) 동일 사업에 대해 1개의 연구책임자로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예: 도약형에 신청하는 경우, 성장형에 신청 불가)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 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차별성을 반드시 확인
 - 타 기관의 지원 과제이거나 기존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로 판명 시 선정 제외
-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제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해외연수, 휴직 등이 예정된 경우 신청 불가
 - 위 사유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및 지원받은 연구비 전액 반납 조치 예정
- (연구비 수혜 이력에 따른 신청 제한) 과거 (재)한국의학연구소 연구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보고서 또는 연구성과물을 미제출한 경우 본 사업 신청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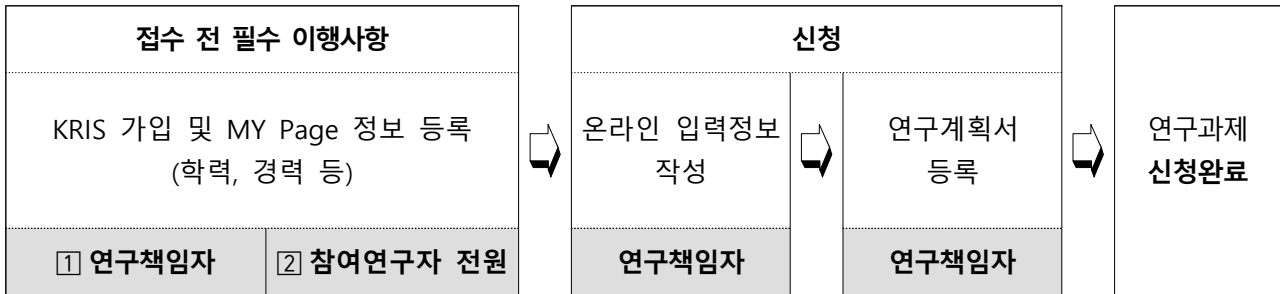
4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 (재)한국의학연구소 연구지원시스템(KRIS, <https://www.kris.kmi.or.kr>)에 연구책임자가 회원 가입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첨부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기관 등록 요청
(제출자료) 기관 사업자등록증
(제 출 처) (재)한국의학연구소 연구지원팀(kmirnd@kmi.or.kr)



※ 연구책임자의 학력, 경력 정보는 필수 입력 사항이며 누락 시 과제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첨부서류

- 2025년도 공모연구지원사업 연구계획서(PDF) 1부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8. 참고문헌까지의 내용을 과제 유형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유형	연구비 규모	계획서 분량
도약형	20,000천원	20쪽 이내
성장형	50,000천원	30쪽 이내
선도형	100,000천원	50쪽 이내

※ 제한 분량 미준수 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고 번호별 접수 건수가 선정 예정 과제 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 가능
-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 내용 중복, 신청 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비, 연구 기간 등 조정 가능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에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선정 후 주요 사항(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해당 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계획서 내 '연구시설·장비 구축 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필수
- 본 공고문은 공고 기간 내 수정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기본방향

-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한 우수과제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등을 조정하고 평가 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 계획서에 반영 후 최종적으로 선정 과제와 협약 체결

□ 평가절차 및 방법

- (1차 사전검토) 제출 서류, 신청자격 충족 여부, 중복과제 여부 등을 심사위원회 평가에 앞서 검토
- (2차 선정평가) 사전검토 요건을 만족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계획서 기반 평가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에 한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 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해당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이 있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계획 (35)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독창성	10
	연구계획의 타당성 - 공고사항과의 부합성 -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내용 및 방법론의 타당성 -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 연구비 계획의 적정성	25
연구역량 (2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 원활한 연구추진 가능성	25
성과활용 (40)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원천기술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과학계, 국민,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20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 지재권 확보 전략,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20
합 계		100

※ 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보고서 및 연구성과물

-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연구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차기 모든 연구사업에 신청 불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유형	공통	연구성과물
도약형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 보고 (제출자료 : 최종보고서, 연구비 집행내역서)	연구 기간 내 학술대회 발표 1건 이상 또는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학술논문 1편 이상 발표
성장형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SCI(E)급 논문 1편 이상 발표
선도형		연구종료 후 1년 이내 SCI(E)급 논문 2편 이상 발표 또는 특허 1건 이상 등록(출원)

- 연구성과물은 원칙적으로 (재)한국의학연구소 소유이며, 협약 체결 시 공동 소유를 요청할 수 있음
- 연구종료 후 연구책임자에게 성과 발표를 요청할 수 있음
- 연구 성과 발표, 홍보 시에는 (재)한국의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임을 반드시 표기하고 이를 사전에 공유해야 함

(국문) 본 연구는 2025년 (재)한국의학연구소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fund from the research program of the Korea Medical Institute.(과제번호)

□ 연구비 계상

- 연구비는 연구개발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
 - 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재)한국의학연구소의 연구비 관리 규정을 따름
- (인건비) 연구수당 포함 인건비의 경우 총 연구비의 60%를 넘는 것을 지양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필수
 - IRB 심의 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

※ 연구책임자는 협약식 당일 선정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수 있음

□ 문의처

○ 문의 전화 전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질의 요망

담당부서	구분	연락처	이메일
연구지원팀	공고 관련 문의	02-3702-9104	kmirnd@kmi.or.kr
	KRIS 시스템	02-3702-9104	
	관련 문의	02-3702-9055	

붙임 1. 2025년도 공모연구지원사업 연구계획서 양식

2. (재)한국의학연구소 연구지원시스템(KRIS) 과제 신청 매뉴얼